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51
----------	-------

발의년월일 : 2021. 5.

발의자 : 나정숙 의원 외 14명

1. 제안이유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추진 사업 규정(안 제5조)
-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7. 부서 검토의견서 : 붙임4

【붙임1】 제정조례안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산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제공·알선·편집·합성·가공·소지하는 행위 혹은 이를 시도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② “2차 피해”란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3)